

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6. 3. 10.(목) 09:3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성준 위 원 장
김재홍 부위원장
김석진 상임위원
이기주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서면회의 결과 확인

○ 제12차 서면회의 결과 <의결안건> 3건이 원안대로 의결·접수되었음을 보고함

⑤ 회의공개 여부 결정

○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⑥ 의결사항

가. 유통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(2016-13-046~051)

- '15. 7. 1.(수) ~ '16. 1. 31.(일) 기간 중 이동통신 서비스를 판매하는 100개의 유통점이 온라인 SNS 등을 통해 공시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「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,
 - 같은 법 제4조제5항(지원금 과다지급 제한) 및 같은 법 제8조제3항(유통점 선입에 대한 승낙)을 위반한 97개 유통점에 대해 같은 법 제14조(시정명령)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하고,
 - 같은 법 제22조(과태료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(과태료 부과기준)에 따라 최초로 과다지원금 지급위반을 한 (주)어울림커뮤니케이션 등 95개 유통점에 150만원의 과태료, 2회 위반한 이백텔레콤에 450만원의 과태료, 장애2급 대표자인 카카오폰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,
 - 사전승낙제를 위반한 송아커뮤니티 등 7개 유통점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, 조사를 거부·방해한 (주)이레시스템 등 3개 유통점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6. 폐 회 (10:33)